

구미팜 농특산물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구 미 시

구미팜 농특산물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7.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구미팜 농특산물 쇼핑몰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쇼핑몰 운영에 관한 시책 개발 및 협력체계 강화를 통하여 행정적·
재정적으로 쇼핑몰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구미팜 농특산물쇼핑몰 목적, 정의, 적용범위 및 쇼핑몰 운영

(안 제1조 ~ 제4조)

나. 위원회 설치, 위원회 기능,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안 제5조 ~ 제9조)

다. 위원회 회의, 간사 및 수당 등(안 제10조 ~ 제12조)

라. 입점자격, 입점신청 및 허가 등, 입점업체의 준수사항, 입점의

탈퇴, 입점의 취소 등(안 제13조 ~ 제17조)

마. 홍보, 비용지원 및 시행규칙(안 제18조 ~ 제20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지방자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붙임)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구미팜 농특산물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팜 농특산물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상거래를 통한 구미시 농업인 등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미팜 농특산물쇼핑몰”이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의 농·축·임산물 및 가공상품 등의 판매와 홍보를 위하여 시가 개설한 인터넷 쇼핑몰을 말한다.
2. “가공상품”이란 시에서 생산된 농·축·임산물의 원자재나 반제품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제품의 질을 높인 상품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제조·가공 등의 허가를 필한 상품으로 한정한다.
3. “입점업체”란 구미팜 농특산물쇼핑몰에 입점하여 전자상거래를 하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5. “전문업체”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필한 개인, 단체 또는 법인 중에서 농·축·임산물 및 가공상품에 대한 전자상거래 위탁 운영 실적이 있고, 쇼핑몰 운영 전담 인력 및 시스템 유지 보수로 IT서비스가 가능한 업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미팜 농특산물쇼핑몰(이하 “쇼핑몰”이라 한다)의 입점업체와 입점 승인된 상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쇼핑몰 운영) ① 입점업체의 농·축·임산물 및 가공상품의 판매는 쇼핑몰을 통한 전자상거래로 하며, 쇼핑몰의 인터넷 주소는 “http://farm.gumi.go.kr”로 한다.

② 시장은 쇼핑몰을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쇼핑몰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 전반에 관한 관리는 기술개발과에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 촉진및관리조례」에 따른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쇼핑몰의 효율적인 운영과 입점업체 관리 등을 위하여 구미팜 농특산물쇼핑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쇼핑몰의 입점업체 및 입점상품 선정에 관한 사항

2. 쇼핑몰의 입점업체 및 입점상품 취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쇼핑몰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심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의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농촌지원 및 기술개발 담당 공무원

2. 구미팜정보화농업연구회 임원 및 운영위원

3. 농·축·임산물, 가공상품 또는 전자상거래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

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쇼핑몰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입점자격) 쇼핑몰의 입점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시 관내에서 농·축·임산물을 생산하는 자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시 관내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시 관내 농업협동조합 및 축산업협동조합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4조(입점신청 및 허가 등) ① 쇼핑몰에 입점하고자 하는 자와 입점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입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입점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쇼핑몰 입점신청 및 허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입점업체의 준수사항) 쇼핑몰 입점업체의 준수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16조(입점의 탈퇴) ① 쇼핑몰 입점업체가 쇼핑몰을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탈퇴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탈퇴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탈퇴 처리하여야 한다.

1. 진행 중인 쇼핑몰 거래 유무
2. 판매된 상품에 대한 사후 관리(반품, A/S 등)

③ 쇼핑몰 입점 탈퇴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입점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입점업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점업체 또는 입점상품을 취소할 수 있다.

1. 매매부적합 상품등록 또는 그 상품을 판매한 경우
2. 권리침해상품(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침해 등) 등록 또는 그 상품을 판매한 경우

3. 쇼핑물 또는 시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4.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5. 제3자의 상품을 판매한 경우
6. 입점신청시 기재한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등이 있거나 변경사항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7.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고객 정보를 임의로 이용한 경우
8. 입점상품으로 판매가 어렵거나 연간 3회 이상 소비자로부터 불만이 제기된 경우
9. 상품이 있음에도 출하 시기에 품질 표시를 한 경우
10. 동일한 문제로 연간 3회 이상 반품 요구가 발생한 경우
11. 입점 후 2년 이상 상품 판매 실적이 없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입점이 취소된 업체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입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홍보) ① 시장은 쇼핑물 상품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1. 포털 사이트, 소셜 네트워크 등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 활동
2. 팸투어(Familiarization Tour)를 활용한 홍보 활동
3. 그 밖에 쇼핑물 상품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활동

② 제1항에 따른 홍보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의 예산, 구미팜정보화농업연구회비 또는 입점업체의 후원 등으로 할 수 있다.

제19조(비용지원) 시장은 쇼핑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입점업체의 상품배송 택배비
2. 입점업체의 배송상품 규격화 택배박스
3. 제18조에 따른 홍보 활동비
4. 쇼핑몰 홍보 콘텐츠 제작비
5. 입점상품의 할인행사 및 홍보 이벤트 비용
6. 그 밖에 쇼핑몰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및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구미팜 농특산물쇼핑몰 입점심의위원회와 그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구미팜 농특산물쇼핑몰 운영위원회 및 그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 임기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시점부터 적용한다.

입점업체 준수사항

- ① 입점업체는 쇼핑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상품등록, 판매과정관리, 주문이행, 상품배송과 청약철회 또는 반품 등 사후처리를 수행해야 한다.
- ② 입점업체는 상품의 배송, 반품, A/S 등과 관련하여 소비자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입점업체는 재고부족 등 판매, 주문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경우 사전에 해당 상품의 품절, 상품숨김 등을 통해 판매주문 상태에 반영시켜야 한다.
- ④ 입점업체는 반품 시 재판매가 불가능한 과일 또는 채소류의 경우 “반품불가표시”처리를 할 수 있다.
- ⑤ 입점업체는 Q&A, 고객게시판, 1:1고객문의에 대한 답변을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다.
- ⑥ 입점업체는 구매자로부터 주문취소에 대한 요청을 받은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확인 이후 발송이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해당 주문취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 ⑦ 입점업체는 쇼핑몰의 전자상거래 판매와 관련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관계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1조(식품산업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국민에게 품질 좋은 식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농산물 가공식품 및 전통식품 등 식품의 연구개발, 식품산업의 시설 설치 및 확충과 마케팅 등에 관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3조(농산물과 식품의 유통개선) ① 생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표준화 촉진과 다양한 유통정보의 수집, 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농촌진흥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이 공동으로 또는 연합하여 농산물과 식품의 생산, 유통, 판매 등을 조직적·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공동 브랜드화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상행위(商行為)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 6. 생략

제21조(금지 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 청약철회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도메인 이름 등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행위
3.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4.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거나 재화등의 공급 없이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5.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6.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재화등의 배송 등 소비자와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나. 재화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 확인에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라.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따라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7.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쉽고 명확하게 소비자에게 설명·고지하지 아니하고 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설치되게 하는 행위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구미팜 농특산물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구미팜」농특산물쇼핑몰 운영에 따른 세출 발생
(안 제4조, 안 제12조, 안 제19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2017년 구미팜 운영비 산정을 근거하여 현재 운영 중인 농특산물 쇼핑몰 세출 등을 기초로 함
- 운영비는 구미시예산 단가를 적용하며, 최근 5년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1.9%)을 매년 적용한다.
- 추계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으로 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구미팜운영비	107,868	110,060	112,150	113,340	115,490	558,908
계	107,868	110,060	112,150	113,340	115,490	558,908

4. 재원조달 방안

(단위: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도비						
시비	107,868	110,060	112,150	113,340	115,490	558,908
민간·기타						
합계	107,868	110,060	112,150	113,340	115,490	558,908

5. 부대의견 : 세출(구미팜 운영비) 예산은 추정비로서, 여건에 따라
변동할 수 있음

6. 작성자

작성자 이름	기술개발과 최문희
연락처	054-480-4261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구미팜 연간운영비 산정

(단위:천 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쇼 핑 물 홍 보 비	20,000	20,512	22,602	23,792	25,942	112,848
홈 페 이 지 유 지 보 수 비	4,318	4,318	4,318	4,318	4,318	21,590
품 질 관 리 모 니 터 링 비	3,250	3,250	3,250	3,250	3,250	16,250
홍보콘텐츠제작비	5,000	5,000	5,000	5,000	5,000	25,000
위 탁 운 영 비	21,600	21,600	21,600	21,600	21,600	108,000
택 배 비 지 원	43,200	43,200	43,200	43,200	43,200	216,000
택 배 박 스 지 원	10,500	10,500	10,500	10,500	10,500	52,500
심 의 위 원 수 당	-	1,680	1,680	1,680	1,680	6,720
계	107,868	110,060	112,150	113,340	115,490	558,908

소관 실·과		기술개발과
입 안 자	과 장	주 대 현
	담 당	최 문 희
	담 당 자	박 주 리 (480-4263)